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 보고 근거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38조(정관의 변경)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사유

- 정규직 직제의 세분화 및 정원의 증원 사항 반영

<추진 배경>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 (2017. 8) 中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정원 내 인력으로 관리 등)
-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8. 5)

□ 개정 주요골자

- 정관의 별표 2 <정원표>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정 원 표(제22조 관련)							<별표 2> 정 원 표(제22조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대표이사</th> <th>감사실장</th> <th>1급</th> <th>2급</th> <th>3급이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47</td> <td>1</td> <td>1</td> <td>1</td> <td>3</td> <td>141</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계	147	1	1	1	3	14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총정원</th> <th colspan="6">문화행정직</th> <th rowspan="2">서비스직</th> </tr> <tr> <th>계</th> <th>대표이사</th> <th>감사실장</th> <th>1급</th> <th>2급</th> <th>3급이하</th> </tr> </thead> <tbody> <tr> <td>173</td> <td>161</td> <td>1</td> <td>1</td> <td>1</td> <td>3</td> <td>155</td> <td>12</td> </tr> </tbody> </table>								총정원	문화행정직						서비스직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173	161	1	1	1	3	155	12
구분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계	147	1	1	1	3	141																																												
총정원	문화행정직						서비스직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173	161	1	1	1	3	155	12																																											

- 상시지속 업무 수행 기간제계약직(14명분)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원 증원
: 청년예술, 생활문화사업 등 2017~2018년 시책·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우선 기간제계약직으로 활용했던 인원을 해당 사업의 상시지속 업무화에 따라 정규직으로 운용함
- (준)공무직(보안, 미화, 시설, 비서 총 12인)을 정규직으로 편입하고 직군 세분화

□ 추진 일정(안)

- 2018년 10월 26일: 소관 상임위원장 보고 완료
- 2018년 11월 1일: 이사회 의결 예정
- 2018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
- 2018년 11월 9일: 소관 구청 신고 예정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재단 이사회 상정의안

제출년월일 : 2018. 11. 1.

제출 팀 : 기획조정팀

1. 제안이유

- 서울시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의 전면 정규직화 추진을 위해, 정관의 별표에 명시된 정규직 정원을 직종별로 세분화하여 변경이 필요함
- 서울시 문화시정 신규 시책사업 및 위탁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로 정착함에 따라, 이를 정규직 인력 중심으로 운영토록 정원을 증원함

2. 주요골자

- 정관 <별표 2> 정원표 개정
 - 정규직 정원을 문화행정직과 서비스직으로 구분
 - “공무직 운영에 관한 내규”로 별도 관리해오던 공무직의 정원(12명)을 직제규정 정규직 정원표에 서비스직 정원으로 구분하여 표기
 - 2017~2018년 신규 시책사업 및 수탁사업을 위해 충원하였던 기간제계약직이 담당하던 업무의 상시지속 업무화에 따라, 서울시 주무부서와 합의한 정규직 14인 정원 증원(147인 ⇒ 161인) 사항을 별표에 명시함

3. 참고사항

- 가. 제안근거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22조, 제24조, 제41조
서울시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985(2018.08.05)호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 요청”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서비스직 처우개선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 예정, 기간제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증액 소요는 없음)
- 다. 합 의 : 서울시 주무부서와 인력운용 계획 협의 완료
- 라. 기 타 : 이사회 의결 후, 서울시 및 소관주무관청 승인 후 시행

[별첨] 제안근거 _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22조(조직 및 정원)

-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28>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41조(시행규정)

-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 제안근거 _ 서울시 요청 공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염' 으로 지켜주세요!

I-SEOUL-U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9033(2017.8.30.)호와 관련입니다.
2.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2017.8.30.)」에 따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아직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확보, 시의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규직 전환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사 협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덧붙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 2단계 기관의 경우, ①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상 정규직화와 ②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2017.8.30.)」상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관련 모두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울주변도시공사 사장, 서울특별시청공사 사장,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서울문화재단이사장,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주무관 **한선희** 노동정책담당관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박영환** 08/06

참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885 (2016.06.05.) 접수 인사팀-949 (2016.06.06.)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 / 서울빌딩 6층

전화 02-2133-5415 /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대시민공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정 원 표							<별표 2> <개정2018. 11. 00> 정 원 표							
구분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총정원	문화행정직					서비스직	
계	147	1	1	1	3	141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173	161	1	1	1	3	155	12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안)

제정 2003. 8. 1
개정 2009. 9. 24
개정 2010. 1. 25
개정 2010. 11. 25
전부개정 2012. 1. 30
개정 2012. 4. 20
개정 2013. 7. 19
개정 2016. 11. 9
개정 2016. 12. 22
개정 2018. 6. 28
[개정 2018. 11.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법인은 「민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은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약칭 「SFAC」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4.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5. 지역문화의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16. 11. 9>
6.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사업) ① 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고시할 사항은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개정 2018. 06. 28.>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근로자이사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2>
4. 감사 2인 이내 <개정 2012. 4. 20>

제9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재정기획관 <개정 2016. 11. 9>
2. 서울특별시문화본부장 <개정 2012. 4. 20, 2016. 11. 9>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고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2018. 06. 28.>

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06. 28.>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18. 06. 28.>

⑤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상관없이 근로자 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신설 2016. 12. 22>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문화예술계 인사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신설 2018. 06. 28.>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6. 28.>

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만약 대표이사까지 부재 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4. 20, 2016. 11. 9>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9조제3항의 당연직이사 중 문화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4. 20, 2016. 11. 9, 2018. 06. 28.>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개정 2012. 4. 20>

⑤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2. 4. 20>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18. 06. 28.>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 12. 22, 2018. 06. 28.>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 12. 22>
7.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8. 근로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6. 12. 22>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총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대표이사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는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 재단의 대표이사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9>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22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06. 28.>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6. 11. 9>
11.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06. 28.>

제2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를 결정하기 전에 지도·감독 주관부서와 투자·출연기관 재정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제3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29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30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4.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5.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4.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3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06. 28.>

제36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6. 28.>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6. 28.>

③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7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9>

제39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9. 9.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또는 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가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관련 조항에서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7.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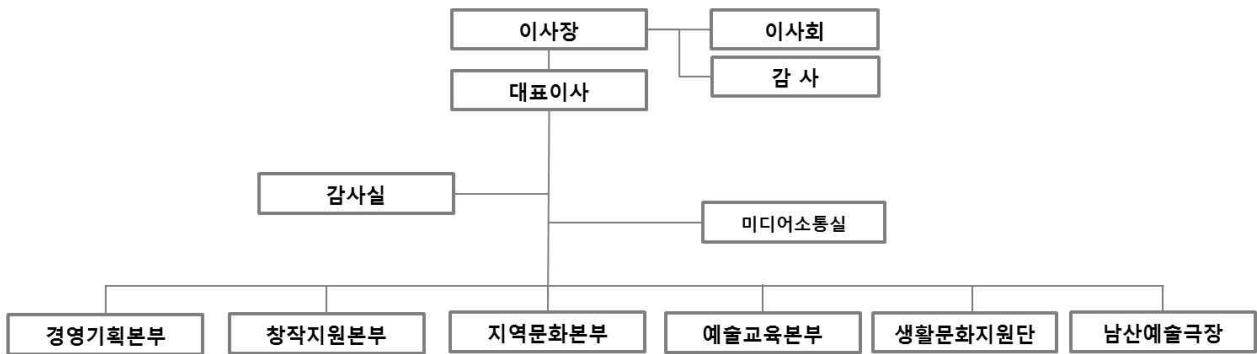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6.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18. 06. 28.)

기 구 표



<별표 2> (신설 2018. 06. 28.) [개정 2018. 11. 00.](#)

정 원 표

(단위 : 명)

총정원	문화행정직						서비스직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173	161	1	1	1	3	155	12

참고자료 - 직제규정 개정(안)

재단 이사회 상정의안

제출년월일 : 2018. 11. 1.

제출팀 : 인 사 팀

1. 제안이유

- 서울시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의 전면 정규직화 추진을 위해, 정관의 별표에 명시된 정규직 정원을 직종별로 세분화하여 변경이 필요함
- 서울시 문화시정 신규 시책사업 및 위탁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로 정착함에 따라, 이를 정규직 인력 중심으로 운영토록 정원을 증원함
- 향후 직종별로 세분화된 직원 운용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필요

2. 주요골자

○ 제5조(직원) 개정

- 기존의 직원의 직종별 구분을 고용형태와 업무성격에 따라 세분화
.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기존 구분 유지
. 업무성격에 따라 문화행정직 및 서비스직으로 구분토록 직종 신설
- 기존의 공무직 업무(미화, 경비, 시설, 비서) 담당자를 서비스직 직종으로 분류함

○ <별표 2> 정원표 개정

- 정규직 정원을 문화행정직과 서비스직으로 구분
- “공무직 운영에 관한 내규”로 별도 관리해오던 공무직의 정원(12명)을 직제규정 정규직 정원표에 서비스직 정원으로 구분하여 표기
- 2017~2018년 신규 시책사업 및 위탁사업을 위해 충원하였던 기간제계약직이 담당하던 업무의 상시지속 업무화에 따라, 서울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정규직 14인 정원을 증원함 (147인 ⇒ 161인)

- 정원 증원분을 추가하여 문화행정직의 직급별 정원을 수정

. 현행

총정원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47	1	1	1	3	10	18	29	47	37

. 개정(안)

총정원	문화행정직										서비스직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73	161	1	1	1	3	10	20	32	52	41	12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22조, 제24조, 제41조
 서울시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985(2018.08.05)호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 요청"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서비스직 처우개선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예정,
 기간제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증액소요는 없음)

다. 합 의 : 서울시 주무부서와 인력운용 계획 협의 완료
 (※관련 기간제 계약직 및 공무원 운영 내역 별첨)

라. 기 타 : 이사회 의결 후, 서울시 승인을 통해 즉시 시행

[별첨] 제안근거 _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22조(조직 및 정원)

-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28>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41조(시행규정)

-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 제안근거 _ 서울시 요청 공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염' 으로 지켜주세요!

I-SEOUL-U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9033(2017.8.30.)호와 관련입니다.
2.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2017.8.30.)」에 따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아직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확보, 시의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규직 전환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사 협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덧붙여,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 2단계 기관의 경우, ①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상 정규직화와 ②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2017.8.30.)」상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관련 모두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울주력도시공사 사장, 서울특별시청공사 사장,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서울문화재단이사장,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주부과 **한선희**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박영환** 06/06

참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885 (2016.06.05.) 접수 인사팀-949 (2016.06.06.)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 / 서울빌딩 6층

전화 02-2133-5415 /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대시민공개

[별첨] 증원 관련 기간제 계약직 및 공무원 운영 내역

○ 현재 공무원 정원 : 12명

- “공무원 운영에 관한 내규”(2014.04.09. 제정)에 명시

구분	청소.미화	시설	경비	행정비서	합계
정원(명)	5	2	4	1	12

-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준)공무원 운영 중

※ 공무원의 정년(60세) 후 고령자 적합 직무(미화, 경비)에 대해서만 관련 법에 근거하여 65세까지 준공무원으로 연장하여 고용함

○ 문화행정직 증원 14명 내역

- 2017~2018년 신규 시책사업 및 수탁사업을 위해 충원하였던 기간제계약직을, 해당 업무의 상시지속 업무화에 따라 정규직 인력으로 운영하고자 함

· 신규 시책사업 담당 기간제계약직 총 17명(청년예술지원사업 7명, 어린이·청소년 학교예술교육사업 4명, 생활문화사업 6명) 중 총 13명으로 운영하며, 기간제계약직 4명분은 계약만료 후 미운영

· 신규사업 수탁 후 임시 TF(삼각산시민청) 운영을 위해 배치한 정규직 1명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u>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u> 구분하며,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u>고용형태에 따라</u>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u>구분하고, 업무성격에 따라 문화행정직, 서비스직으로</u> 구분하며,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u><개정 2018. 11. 00></u>																																													
<별표 2> 정 원 표											<별표 2> <u><개정 2018. 11. 00></u> 정 원 표																																													
구분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147	1	1	1	3	10	18	29	47	37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총 정원</th> <th colspan="10">문화행정직</th> <th rowspan="2">서 비 스 직</th> </tr> <tr> <th>계</th> <th>대표이사</th> <th>감사실장</th> <th>1급</th> <th>2급</th> <th>3급</th> <th>4급</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r> </thead> <tbody> <tr> <td></td> <td>173</td> <td>166</td> <td>1</td> <td>1</td> <td>1</td> <td>3</td> <td>10</td> <td>20</td> <td>32</td> <td>52</td> <td>41</td> <td>12</td> </tr> </tbody> </table>											총 정원	문화행정직										서 비 스 직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73	166	1	1	1	3	10	20	32	52	41	12
총 정원	문화행정직										서 비 스 직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73	166	1	1	1	3	10	20	32	52	41	12																																												

직 제 규 정

제정	2004.	3.	12
개정	2005.	1.	28
개정	2006.	2.	21
개정	2006.	7.	11
개정	2007.	10.	15
개정	2008.	2.	4
개정	2009.	3.	9
개정	2009.	9.	18
개정	2010.	1.	20
개정	2011.	2.	1
개정	2012.	8.	21
개정	2013.	3.	27
개정	2013.	7.	10
개정	2014.	1.	17
개정	2014.	4.	9
개정	2015.	2.	6
개정	2015.	6.	11
개정	2016.	4.	1
개정	2017.	1.	2
개정	2017.	12.	27
개정	2018.	11.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시기구) 대표이사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 내에 적정규모의 임시기구를 직제 외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4조(임원)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구분하고, 업무성격에 따라 문화행정직, 서비스직으로 구분하며,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3. 27, [2018. 11. 00](#)>

제5조의 2(개방형직위) ① 대표이사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내부나 외부에서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정원 내 일반 계약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서는 직제 및 정원규정에 근거하여 서울문화재단 계약직 직원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17. 12. 27>

제6조(정원) 재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2. 27>

제7조(정원 외 직원) 재단은 수행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기구와 정원에 관계없이 사업수행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제3장 기구

제8조의1(기구) ① 재단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문화정책위원회, 감사실, 미디어소통실, 경영기획본부, 창작지원본부, 지역문화본부, 예술교육본부, 생활문화지원단, 남산예술극장을 두고 16팀을 둔다. <개정 2005. 1. 28, 2006. 2. 21, 2006. 7. 11, 2007. 10. 15, 2008. 2. 4, 2009. 3. 9, 2011. 2. 1, 2012. 8. 21, 2013. 3. 27, 2013. 7. 10, 2015. 6. 11, 2016. 4. 1, 2017. 1. 2, 2017. 12. 27>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한다.

③ <개정 2006. 2. 21, 2009. 3. 9, 2009. 9. 18> <삭제 2012. 8. 21>

④ 감사실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감사실, 감사팀을 통할하여 상시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파견공무원을 보할 수 있다. <신설 2006. 2. 21> <개정 2009. 3. 9, 2012. 8. 21, 2013. 3. 27>

⑤ 경영기획본부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기획조정팀, 인사팀, 경영지원팀, 미래전략팀을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06. 2. 21> <개정 2006. 7. 11, 2007. 10. 15, 2008. 2. 4, 2009. 3. 9, 2011. 2. 1, 2012. 8. 21, 2013. 3. 27, 2015. 6. 11, 2017. 1. 2, 2017. 12. 27>

⑥ <삭제 2009. 3. 9>

⑦ <신설 2006. 2. 21> <삭제 2007. 10. 15>

⑧ <삭제 2006. 7. 11>

⑨ <신설 2008. 2. 4> <개정 2009. 3. 9, 2011. 2. 1><삭제 2012. 8. 21>

⑩ <신설 2008. 2. 4> <개정 2009. 3. 9, 2011. 2. 1><삭제 2012. 8. 21>

⑪ 지역문화본부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지역문화팀, 축제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2. 8. 21.><개정 2015. 6. 11, 2016. 4. 1, 2017. 1. 2>

⑫ 예술교육본부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2. 8. 21.><개정 2015. 6. 11>

⑬ 창작지원본부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창작지원팀을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2. 8. 21.><개정 2015. 6. 11>

⑭ <삭 제 2017. 12. 27>

⑮ 재단은 창작공간 운영과 수탁사업의 수행 및 광역지원 역할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팀

에 준하거나, 팀에 속하는 「단위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 8. 21.><개정 2013. 7. 10, 2015. 6. 11>

⑯ 재단의 기구표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2. 8. 21>

⑰ 미디어소통실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메세나팀, 미디어팀을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5. 6. 11> <개정 2017. 1. 2> <개정 2017. 12. 27>

⑱ 남산예술극장 극장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극장운영팀을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5. 6. 11>

⑲ 생활문화지원단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생활문화사업팀, 생활문화교류팀, 시민청을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7. 1. 2> <개정 2017. 12. 27>

제8조의2(팀장)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에 상응하는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6. 2. 21> <개정 2008. 2. 4, 2009. 3. 9, 2011. 2. 1, 2012. 8. 21, 2017. 12. 27>

제8조의3(담당) ① 팀에는 담당업무별로 담당자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 2. 21> <개정 2008. 2. 4, 2009. 3. 9, 2011. 2. 1, 2013. 7. 10>

② 담당에는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담당자를 보할 수 있으며, 복수로도 담당자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 2. 21>

제8조의4(매니저) 팀에 준하여 운영되는 단위조직에는 매니저를 두며, 6급 이상에 상응하는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2. 8. 21.> <개정 2017. 12. 27>

제8조의5(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임금피크제 도래자로 재단 주요 핵심사업의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② 전문위원은 직급과 소속본부에 구애받지 않고 보한다. <신설 2017. 12. 27>

제9조(업무분장) ① 부서별 업무분장은 내규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내규에 의한 업무이외에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분장사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28>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 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운영국장”을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② 예산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운영국장”을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③ 회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회계부서 총괄국장”을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④ 문서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운영지원부”를 “총무업무담당부서”로, 제50조 중 “운영지원부”를 “문서주관부서”로 하고, 별표 1을 개정한다.

⑤ 물품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소관 국장”을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⑥ 제안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처장”을 “경영본부장”으로, “기획운영국장”은 “전략기획팀장”으로, “문화사업국장”을 “문화사업팀장”으로 한다.

⑦ 기부금관리및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무처장”을 “경영본부장”으로, “기획운영국장”을 “경영관리팀장”으로, “문화사업국장”을 “대외협력팀장”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대표이사 방침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문서관리규정 중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서분류기호

부 서 명	문서기호	분류기호
창의경영팀	기획 / 경영	1100
총무회계팀	총무	2200
홍 보 팀	홍보	2300
문예지원팀	지원	3100
문화진흥팀	진흥	3200
문화사업팀	사업	3300
축 제 팀	축제	3400

② 제안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사업팀장”을 “문화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대표이사 방침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안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략기획팀장”을 “창의경영팀장”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대표이사 방침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문서관리규정 중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서분류기호

부 서 명	문서분류기호
창의경영팀	창의경영팀
총 무 팀	총 무 팀
홍보마케팅팀	홍보마케팅팀
공간운영팀	공간운영팀
예술지원팀	예술지원팀
서울문화팀	서울문화팀
문화사업팀	문화사업팀
축제기획실	축제기획실
축제지원팀	축제지원팀
문화교육센터	문화교육센터
검 사 역	검 사 역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대표이사 방침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3.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 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영본부장”을 “경영혁신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② 인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영본부장”을 “경영혁신기획본부장”으로 한다.

제44조 중 “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역”으로 한다.

③ 예산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영본부장”을 “경영혁신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④ 회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경영본부장”을 “경영혁신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⑤ 물품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영본부장”을 “경영혁신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⑥ 제안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영본부장”을 “경영혁신기획본부장”으로, “창의경영팀장”은 “비전정책팀장”으로 한다.

⑦ 기부금관리및운영규정시행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제1항 중 “경영본부장”을 “경영혁신기획본부장”으로, “창의경영팀장”을 “비전정책팀장”으로, “총무팀장”을 “재무관리팀장”으로 한다.

⑧ 승진제도시행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역”으로 한다.

⑨ 국외여행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 중 “경영본부장”을 “경영혁신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⑩ 국외연수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창의경영팀장”을 “비전정책팀장”으로 한다.

⑪ 문서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역”으로, “경영본부장”을 “경영혁신기획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서분류기호

부 서 명	문서분류기호
비전정책팀	비전정책팀
재무관리팀	재무관리팀
홍보마케팅팀	홍보마케팅팀
예술지원팀	예술지원팀
문화사업팀	문화사업팀
축제제작팀	축제제작팀
축제지원팀	축제지원팀
열린극장창동팀	열린극장창동팀
예술교육팀	예술교육팀
극장운영팀	극장운영팀
공간지원팀	공간지원팀
창작공간추진단(TF)	창작공간추진단(TF)

부 칙 <2009.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이사회 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영혁신기획본부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②인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팀장”을 “팀장, 검사역”으로 한다.

③예산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영혁신기획본부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④회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경영혁신기획본부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⑤물품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영혁신기획본부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⑥제안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비전정책팀장”을 “기획조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영혁신기획본부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문화축제사업본부장”을 “창작지원본부장”으로, “비전정책팀장”을 “기획조정팀장”으로 한다.

⑦문서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경영혁신기획본부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⑧수탁사업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경영혁신기획본부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⑨재단청사운용및대관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중 “경영혁신기획본부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⑩기부금관리및운영규정시행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경영혁신기획본부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비전정책팀장”을 “기획조정팀장”으로, “재무관리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홍보마케팅팀장”을 “홍보교류팀장”으로 한다.

⑪국외여행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3항 중 “경영혁신기획본부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⑫사무위임전결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1표> 중 “경영혁신기획본부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비전정책팀장”을 “기획조정팀장”으로, “재무관리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홍보마케팅팀장”을 “홍보교류팀장”으로 한다.

부 칙 <2012.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인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본부장 및 센터장은 1급 내지 3급으로 보한다.”를 “본부장은 1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보한다.”로, 제2호 “팀장, 검사역은 2급 내지 5급으로 보한다.”는 “팀장은 2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정책보좌역”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②보수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정책보좌역”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③문서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정책보좌역”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④제안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창작지원본부장”을 “문화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⑤감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검사역”은 “감사실장 및 검사역”으로 한다.

⑥수탁사업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별지 제2호 서식] 중 “정책보좌역”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⑦일상감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검사역”은 “감사실장 또는 검사역”으로 한다.

⑧기부금 관리 및 운용규정 시행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홍보교류팀”은 “문화제휴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홍보교류팀장”은 “문화제휴팀장”으로 한다.

⑨성희롱예방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정책보좌역”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⑩정보공개 운영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창작지원본부장”은 “문화사업본부장”으로, “창의예술센터장”은 “예술지원본부장”으로, “창작공간추진단장”은 “창작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⑪문서관리규정 중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13. 3. 27>

부 칙 <2015.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 서 분 류 기 호

부 서 명	문서분류기호
감사실	감사실
감사팀	감사팀
기획조정팀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홍보팀	홍보팀
정보화사업팀	정보화사업팀
정책연구팀	정책연구팀
시민문화팀	시민문화팀
문화나눔팀	문화나눔팀
축제기획팀	축제기획팀
문화제휴팀	문화제휴팀
예술지원팀	예술지원팀
예술교육팀	예술교육팀
극장운영팀	극장운영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합관리운영	통합관리운영
금천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홍은예술창작센터	홍은예술창작센터
잠실창작스튜디오	잠실창작스튜디오
서교예술실험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성북예술실험센터	성북예술실험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시민청 TFT	시민청 TFT
가든파이프 운영 TFT	가든파이프 운영 TFT
축제지원센터 TFT	축제지원센터 TFT

부 칙 <2015. 6.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제안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사업본부장”을 “시민문화본부장”으로 한다.

② 문서관리규정 중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서 분 류 기 호

부 서 명	문서분류기호
감사팀 제휴협력실 문화자원기증센터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홍보팀 IT기획팀 정책연구팀 창작지원팀 서울연극센터 서울무용센터 문래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공공예술센터 축제지원센터 문화나눔팀 잠실창작스튜디오 시민청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성북예술창작센터 극장운영팀	감사팀 제휴협력실 문화자원기증센터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홍보팀 IT기획팀 정책연구팀 창작지원팀 서울연극센터 서울무용센터 문래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공공예술센터 축제지원센터 문화나눔팀 잠실창작스튜디오 시민청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성북예술창작센터 극장운영팀

부 칙 <2016.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 ① 문서관리규정 중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 서 분 류 기 호

부 서 명	문서분류기호
감사팀	감사팀
제휴협력실	제휴협력실
문화자원기증센터	문화자원기증센터
기획조정팀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홍보팀	홍보팀
IT기획팀	IT기획팀
정책연구팀	정책연구팀
창작지원팀	창작지원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센터
서울무용센터	서울무용센터
문래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연희문학창작촌
서교예술실험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신당창작아케이드
공공예술센터	공공예술센터
축제팀	축제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문화나눔팀	문화나눔팀
잠실창작스튜디오	잠실창작스튜디오
시민청	시민청
예술교육팀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서울예술치유허브
극장운영팀	극장운영팀

부 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3> 기구표에서 “문화정책위원회”의 삭제는 현재 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18.2.28)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이 시행한 날로부터 다른 규정에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6. 2. 21> <개정 2008. 2. 4> <개정 2009. 3. 9> <개정 2011. 2. 1> <개정

2012. 8. 21, 2015. 6. 11, 2017. 1. 2, 2017. 12 .27>

직급 및 직위

직 급	직 위
3급이상	본부장
4급이상	실장, 극장장, 단장
5급이상	팀장
6급이상	매니저

<별표 2> <개정 2005. 1. 28, 2006. 2. 21, 2008. 2. 4, 2010. 1. 20, 2012. 8. 21, 2013. 7. 10, 2014. 1. 17, 2014. 4. 9, 2015. 2. 6, 2017. 1. 2, 2017. 12 .27, [2018. 1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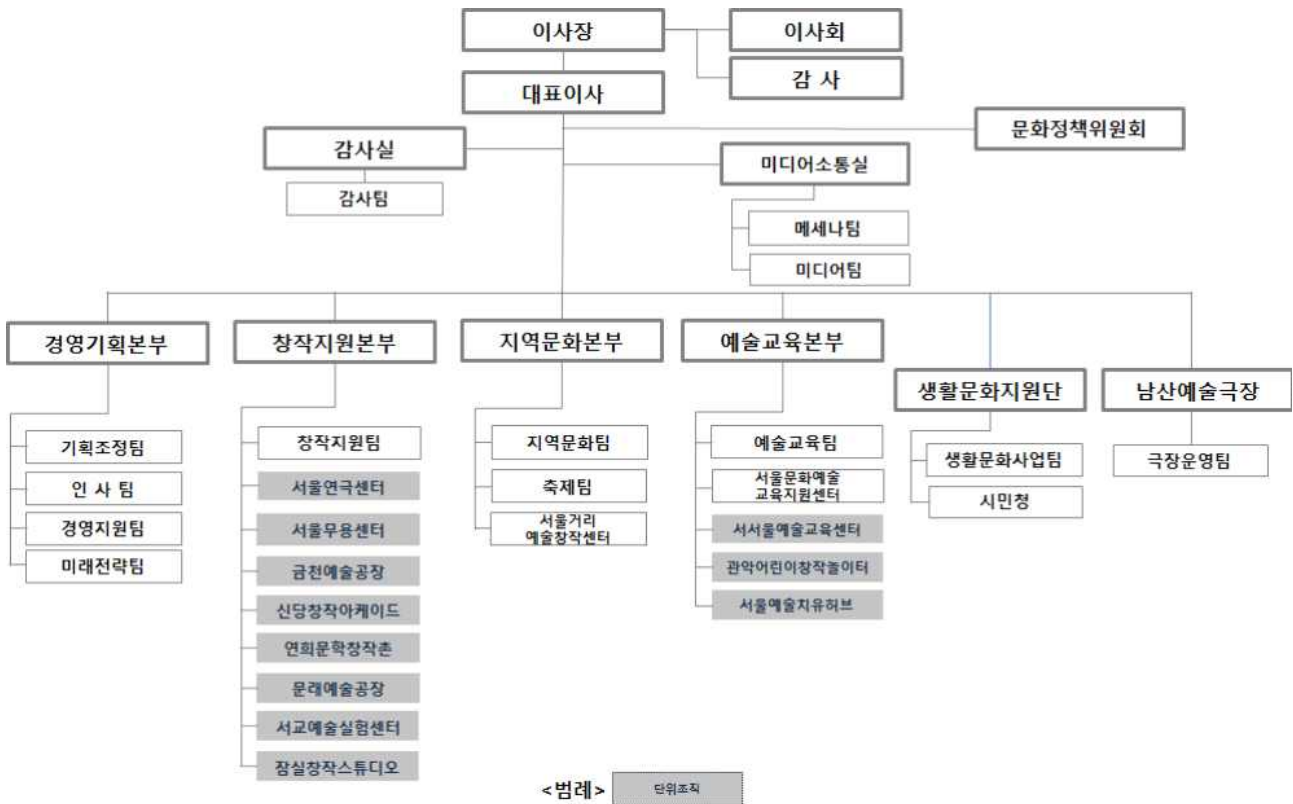
정 원 표

(단위 : 명)

총정원	<u>문화행정직</u>						<u>서비스직</u>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u>173</u>	<u>161</u>	1	1	1	3	<u>155</u>	<u>12</u>

<별표 3> <개정 2005. 1. 28, 2006. 2. 21, 2006. 7. 11, 2007. 10. 15, 2008. 2. 4, 2009. 3. 9, 2011. 2. 1, 2012. 8. 21, 2013. 3. 27, 2015. 2. 6, 2015. 6. 11, 2016. 4. 1, 2017. 1. 2, 2017. 12. 27>

기 구 표



2018년 서울문화재단 수탁사업 현황

사업명		위탁처	2018년 예산	수행부서	사업내용
합 계			35,320,325		
1	남산예술센터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3,147,081	극장운영팀	-남산예술센터: 동시대 창작연극의 제작, 제작시스템 구축, 시민문화향유 제고, 무대기술 지원 및 시설관리 -삼일로창고극장: 민간 협력모델 구축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 대관사업, 무대기술 지원 및 시설관리
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19,135,000	지역문화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용 관리 및 촉진 (문화누리카드 :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개인별 7만원권 전용카드)
3	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2,748,000	창작지원팀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창작활동 촉진을 위한 예술작품 제작 및 발표 활동비 지원
4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2,396,000	창작지원팀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협력지원: 공연예술 단체에게 필요한 상주공간-서울지역 공연장에게 필요한 공연 콘텐츠를 상호매칭하여 지원금 지원
5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508,000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예술교육단체 지원
6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300,000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민예술대학 등 -문화예술 관계자 간 네트워크 지원 -문화예술교육 정보인프라 강화 및 지원시스템 구축, 서울문화예술교육 정보자료관 운영
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1,600,000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회관 및 예술교육단체 지원
8	시민청운영사업	시민소통담당관	221,1360	시민청	-시민청 시설물 관리 -시민 주도의 소통·문화·생활 프로그램, 시민청 결 혼식 등 각종 행사 기획·운영
9	뉴딜일자리	일자리정책담당관 (뉴딜일자리팀)	48,840	지역문화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누리카드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 서비스 제공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인지도 제고 및 발급률·이용률 제고
10	삼각산시민청	시민소통담당관	813,679	삼각산 시민청TF	-제2시민청 시설물 관리 -지역시민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지역주민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방안 및 안전 대책 수립 및 시행
11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연습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문화시설과 (문화시설팀)	2,477,875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관사동 리모델링을 통한 레지던스 및 커뮤니티공간 조성 -제1취수장 등 안전시설물 개선

2017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거버넌스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예산이 과다편성, 방만하게 집행된 것처럼 보이니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생활문화사업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년대비 1건당 지원금 교부액 규모 축소 (7천만원→5천만원) ○ 예산집행, 특히 지원금 사용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지원금 예산 서울시청에서 자치구 경상보조금으로 교부 완료 ○ 자문회의 운영 횟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진행상황에 따른 탄력적 자문회의 운영으로 횟수 축소 (2017년도 대비 운영 횟수 50% 수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별 지원금 정산보고 취합 및 검토 : '18. 12.
<p>2. <메모리 인 서울> 사업의 폐지 근거가 없으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지역문화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수집 자료 활용 방안 마련 유관 기관 협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기록원 관계자 협의(1차, '17. 8.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수집 자료 이관 관련 협의, 목록 제공 완료 - 시민생활사박물관 관계자 협의회의 개최('17. 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수집 자료 활용 기획 전시 개최 등 협력사업 추진 협의 - 서울기록원 관계자 협의(2차, '18.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수집 자료 이관·서비스 방식 관련 구체적 협의 ○ 기억수집 자료를 오픈소스 제공 : 1건(삼풍백화점 채록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서울기록원, 시민생활사박물관 등) 파트너십을 통한 대시민 정보·자료 제공 서비스(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서울시민예술대학의 경우 시민 수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수혜규모 확대 공모 및 교육장소 다양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예술대학 운영이 저조한 7개 자치구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공고 - 지역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단의 창작공간을 서울시민예술대학 캠퍼스로 운영 확대 (2017년 5곳⇒ 2018년 6곳) - 학기제 도입을 통해 상·하반기로 모집시기를 나누어 운영함에 따라 수혜범위는 확대하고,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도입하여 중복수혜 규모는 최소화함.
<p>4. 매개자 선발 시 민간의 비율을 높여 거버넌스 구성체 추진이 필요. 관 참여 비율을 낮추고 민이 다수가 될 수 있도록 늘려주길 바람 (생활문화사업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자치구별 그루넷 중심으로 거버넌스25 민관 협치체계 구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별로 그루넷(20개 이상의 동아리네트워크모임)을 중심으로 구청-매개자-동아리 거버넌스 구축 완료 - 동아리가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소규모 발표회, 생활 예술동아리축제 진행('18년 397회 모임 진행)
<p>5. 서서울예술창작센터를 포함 교육사업의 참가자 숫자가 예산대비 적으니 참가자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예술교육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예술놀이 LAB 프로그램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학교참여&커뮤니티(방과후) 467회 운영, 7,725명 참여 (* 2017학교참여 160회, 3,661명 참여) ○ 미디어 프로그램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44회 운영/상시운영, 947명 참여 ○ 기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프로그램 (장기15회/상설2018.06.05.~08.31) 운영, 2,736명 참여 ○ 여름방학 특별기획 프로그램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26개 프로그램 운영, 5,061명 참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의 예산안 및 사업설명 당시 세부사업과 이후 실제 세부사업이 차이가 있음. 세부사업별 철저한 예산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
(창작지원팀)

추진상황 : 완료

추진내용

○ 사업구분

- '18년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사업설명(공고일 2월28일) 당시와 동일한 세부사업과 예산배분으로 추진되고 있음

세부사업	대상	내용
최초예술지원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39세 이하 예술인 또는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인	- 작품 구상을 위한 자료조사, 워크숍 등 발표 전 단계 사전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창작준비 지원 -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발표를 지원하는 작품 발표 지원
서울청년예술단	35세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활동비 및 사업비 지원
청년예술공간지원	청년예술인(단체) 창작 발표 및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예술인(단체)의 안정적 창작기반과 상호 협력 플랫폼 조성을 위해 민간에서 운영 중인 공연·전시장, 복합문화공간 대상 공간운영비(임차료, 운영자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지원

○ **선정결과**

세부사업	접수	선정	선정률	예산(백만원)	비고
합계	2,188건	359건	16%	4,782,800천원	
최초예술지원	1,518명	266명	18%	1,519,200천원	하반기 2차공모 예정
서울청년예술단	574단체 (2,793명)	58개단체 (281명)	10% (단체기준)	2,400,600천원	
청년예술공간지원	96건	35건	37%	863,000천원	

향후계획

- '17~'18년 운영결과를 토대로 '19년 사업계획 수립에도 정확도를 높여 계획→실행단계를 일치시키도록 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재단의 기존 예술인 지원사업 및 문화본부 유사사업과 중복가능성이 높으니 사업의 조정을 통해 예산절감할 것 (창작지원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재단 조직개편 및 본부간 사업현황을 고려하여 중복요소를 진단하고 사업 재설계 시 반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에서 '유망예술지원' 분리 편성 예술계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한 신진예술가를 발굴하는 본 취지에 부합하게 '청년예술가'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도록 함 - 기존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에서 '예술의사회적활동지원' 분리 편성 사회적예술 프로젝트의 깊이와 파급 및 확장성을 고려, 기성 및 청년예술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편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7,000,000천원('17년 대비 7% 감액) - 기간 : 1~12월 - 공모 :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의 서울시 업무이관을 고려한 중복요소 제거 등 사업 재설계를 통해 별도 추진 (창작지원본부) ○ 유망예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500,000천원('17년 대비 20% 감액) - 기간 : 1~12월 - 공모 : 다년(2년)지원방식에 따라 '17년 선정자의 2차지원으로 '18년 신규 공모는 없음 ○ 예술의 사회적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500,000천원('17년 대비 57% 감액) - 기간 : 1~12월 - 공모 : 사업 재설계를 통해 별도 추진(지역문화본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서울거리예술축제의 인원추계 방식, 종합적인 공연지연 안내 미진 등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아직 있으니 개선바람 (축제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추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행사장 별 종합안내소의 참가인원 현황을 취합하여 종합상황실에서 집계한 것으로, - 세종대로는 페르미 추정법에 의거, 1평당(3.3㎡) 최대 10명을 기준으로 행사장 전체면적 대비 인원 산출 및 이를 통한 행사시간 누적 연인원 산출로 관람인원수 집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페르미 추정법 : 일정한 면적 안에 있는 사람의 수를 세고, 이를 대상지역의 면적에 비례해서 계산하는 방법 (경찰에서 집객 추산 시 활용)</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주요 행사장인 서울광장의 경우, 행사장 주요 진출입로에 진행요원을 배치하여 수동 계수기를 사용하여 실시간 인원을 측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관람인원 산출 및 현장상황근무자가 최종 확인하여 세부 관람인원수를 집계 -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청계천)의 경우, 서울시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광장 내에 배치된 관리직원 등에 의해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는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세부인원 산출 ○ 종합적인 공연지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전 관객 안내멘트는 공연10분전, 5분전, 직전 멘트로 진행 - 사이트별 공연 10분 이상 지연 시 지연멘트 진행 - 도미노 지연의 경우 10분 이하 발생 시 별도의 지연멘트 없이 사전계획에 따라 안내 멘트 후 진행 - 서울광장의 경우 공연 스팟을 3개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진행, 인접한 사이트에서 지연 시 음향충돌 문제로 불가피한 지연발생. 음성안내는 진행중인 공연에 지장을 주므로 공연 종료시까지 별도 안내멘트 진행 불가 - 많은 시민들 운집으로 인한 일부 사이트 스피커 방향에 따른 안내멘트 수신불량 상황 발생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 인원추계 방식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별 집계방식은 2017년의 형식을 유지하되 수동 계수기를 통한 인원추계의 경우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현장 배치 관리인원 2인 이상의 집계 수 취합 평균값으로 세부인원 산출 ○ 공연지연 안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5분 초과 지연 시 지연멘트 안내로 수정 - 도미노 지연의 경우 직전 공연 안내멘트 진행시 지연에 대한 부분 관객에게 고지 및 양해멘트 추가 진행 - 음성안내 불가상황 대비 공연지연 피켓 및 음향시스템 강화 - 각 사이트별 아나운서 길동이를 신규 배치하여 사이트별 변동사항 현장안내 강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생활문화매개자 양성에 대한 불용액이 766,000천원(34.8%)는 당초 활동비 책정을 많이해서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생활문화사업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예산계획 대비 지역 및 장르별 필요한 매개 인력수를 고려하여 1, 2차에 걸친 선발 진행에 따른 매개자 활동기간 축소 및 매개자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FA 센터 조성 및 운영비도 서울시와 의견교환을 통해 추진 보류에 따라 예산 불용 발생 ○ 생활문화지원단 부서 신설, 신규 인력 배치 등 사업 개시가 2017년 3월로, 사업 추진 시점이 지연됨 ○ 따라서 2018년도 예산 계획 수립 시 반영 완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예술매개자(FA) 실제 재단 내 운영 가능성 및 현장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매개자 인원 하향 조정하여 운영 ○ 18년도 활동비 예산 356,000천원 감액 (17년도 : 1,088,000천원, 18년도 : 732,000천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이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마을미디어 지원사업”과 취지 및 사업형태에서 상당부분 유사함. 유사·중복으로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니 시정 바람.
(생활문화사업팀)

추진상황 : 완료

추진내용




- 생활예술매개자(FA) 유사 중복사업 검토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생활예술매개자(FA) 사업은 서울시 전역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자원과 활동을 발굴·지원·촉진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의 세부 추진 과정 및 지원 내용에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18년도 매개자 공모 시, 중복 유사사업 및 활동 내용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중복 활동에 대한 자격 제한함.

구분	생활예술매개자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미디어 지원사업
목적	-서울시민 스스로 생활예술 활동의 자발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예술 매개자(FA)를 선정하여 다양한 생활예술 자원과 활동을 발굴·지원·촉진하고자 함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 제안, 직접 실행하는 주민 주도 사업임	-시민 누구나 직접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을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미디어 활동 기회 제공
대상	-연령 : 20~60세 이하 -유형 : 지역 생활예술 문화 활동가, 생활문화 예술활동자(동아리 포함)등	-연령 : 제한없음 -해당 구에 거주하고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	-연령 : 제한없음 -서울시 관내 3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내용	-활동비 : 월 120만원 -선정자 대상 기본 공동교육 6회 실시 -월 1회 네트워킹 교류 프로그램 개최 -연말 최종 공유회 개최 등	-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주민 자치적 마을 생태계 조성 -지원내용 : 활동비, 프로그램 지원비, 교육 및 컨설팅	-활동 지원금 : 3,500천원~7,000천원 -10차시 교육 제공
주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서울시

향후계획

- 18년도 매개자 활동 관리 및 결과보고 : 2018.11~12.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1.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장려를 위해 홍보비 확대 시행하기 바람 (지역문화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2017년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편성이 불가능하여 (문체부-서울시 위탁 사업), 제휴프로그램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추진 ○ 홍보 강화 프로그램 (카카오톡, SNS 활용 기본 홍보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휴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총 57건 할인 프로그램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이용권 대상 특별 할인 제공 제휴처 섭외 협의를 통해 할인 제공 및 홍보 추진(웹전단 제작·배포 등) - 2017년 실적 : 공연 분야 43건 / 여행 분야 14건 <p>※ 제휴프로그램 사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td> </tr> <tr> <td>뮤지컬 서편제 (10/20~11/5), 82% 할인 제공</td> <td>뮤지컬 모래시계 (12/5~31), 68% 할인 제공</td> <td>제휴프로그램 안내 웹 전단 제작배포 (11월)</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이용 독려 특별 이벤트 운영 : 연간 총 8회, 863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실적 인증 시 경품 증정 이벤트 진행 (이용률 제고 도모) - 공연 티켓 기부 유치 등 비예산 경품 확보를 위한 노력 진행 3) 가맹점 이용안내지 신규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자치구별 가맹점 주소, 연락처 등 정보 안내지를 제작하여 각 동주민센터에 배포 - 2017년 이용 안내 가맹점 : 총 2,469개 (숙박 제외) ○ 2017년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 실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문화누리카드 발급률</u> : 99.39% (전년대비 2.64% 상승) - <u>문화누리카드 이용률</u> : 88.14% (전년대비 3.46% 상승) <p>※ 서울 지역 최초로 2018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등급(S) 달성</p>				뮤지컬 서편제 (10/20~11/5), 82% 할인 제공	뮤지컬 모래시계 (12/5~31), 68% 할인 제공	제휴프로그램 안내 웹 전단 제작배포 (11월)
							
뮤지컬 서편제 (10/20~11/5), 82% 할인 제공	뮤지컬 모래시계 (12/5~31), 68% 할인 제공	제휴프로그램 안내 웹 전단 제작배포 (11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운영비 예산 축소에 따른 저비용고효율 홍보 기획 필요 - 서울시의 2018년 운영비 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 홍보비 또한 50% 감축 예정 - 비용이 소요되는 기본 홍보 채널인 카카오 메시지 발송,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배포 등의 축소 및 중단이 예상됨 ▶ 저비용 홍보 채널인 SNS, 온라인 홍보마케팅 특화 진행 기획 - 신규 채널 발굴 외에도 기존 자체 SNS 홍보 채널 강화 <table border="1" data-bbox="619 660 1449 761"> <thead> <tr> <th>카카오플러스 친구</th> <th>블로그 방문자(누적)</th> <th>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th> </tr> </thead> <tbody> <tr> <td>8,627명</td> <td>371,324회</td> <td>1,337회</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자체의 개선을 통한 마케팅 강화 추진 - 할인·협력가맹점을 발굴·연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구매 대행 서비스' 등 거동불편자,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등 개발 ▶ 2018년도 홍보비 항목 일부 축소에 대응하여, 서울시 협조로 뉴딜일자리 인력 활용을 통해 대처하기로 함 - 뉴딜일자리 인력(2인)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홍보 장려를 위한 전담인력(홍보 서포터즈)로 적극 활용 예정 	카카오플러스 친구	블로그 방문자(누적)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8,627명	371,324회	1,337회
카카오플러스 친구	블로그 방문자(누적)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8,627명	371,324회	1,337회					
<p>2. 신규사업인 청년예술인창작 지원사업 관련 적극적 홍보 및 홍보비 확대 필요 (창작지원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청년예술인창작지원 75억 중 105,958천원(약1.4%) 소요 ○ '18년은 총사업비의 감액비율을 고려하여, 청년예술지원 70억 중 65,000천원을 편성함 ○ (개선)최초예술지원 및 서울청년예술단에 선정된 예술인/단체의 월별 발표공연/전시에 대한 온라인 통합홍보 진행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한 카드뉴스 제작 배포 ○ 서울청년예술단의 선정단체(단원)간 교류를 위한 온라인 카페 개설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 지면 광고편을 통한 기획기사 게재(10월 및 11월 각 1건) ○ 청년예술인 특성을 고려하여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 중점 ○ 사업설명회 등 주요 행사 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한 중계 서비스 제공 						

건의사항	조치결과																								
<p>3. 시 청년사업과 선정자와 중복지원여부 철저히 확인해 주기 바람 (창작지원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4월 6일(금) ~ 5월 4일(금) 심의를 통해 선정된 최초예술지원 선정예술인(266명) 과 서울청년예술단(58개 단체, 281명) 두 사업간 중복 선정 예술인은 없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이후에도 두 사업 간 중복 선정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예정 																								
<p>4. 취약장르인 무용분야 저변 확대가 필요하니 검토바람 (창작지원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예술계 온·오프라인 정보 교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로 무용 분야 저변 확대 및 무용 예술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진의 특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영상콘텐츠 운영으로 무용 장르의 역동성과 현장성을 부각시켜 정보 교류 활성화 - SNS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 강화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통해 국내외 무용예술계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 웹진 <춤:in> 영상콘텐츠 신설 및 추가 운영(매월 15일 발행) ○ 해외기관(MR, K3, KAC) 협력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서울국제안무워크숍 강화, 예술경영지원센터 협력을 통한 PAMS Link 쇼케이스 추진 및 탄츠메세 참여 																								
<p>5. 청년예술단 등 시 청년사업과 중복사업 선별, 관련 예산 조정 필요함 (창작지원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544 1559 1455 2069"> <thead> <tr> <th>구분</th> <th>2017 서울청년예술단</th> <th>2017 청년예술인 창작지원</th> </tr> </thead> <tbody> <tr> <td>목적</td> <td>- 단기 예술경력으로 인해 공공 지원에서 소외되고 예술계에 안착하지 못한 청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예술창작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td> <td>- 기존 예술지원제도의 시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인 대상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 활동 기반 조성</td> </tr> <tr> <td>규모</td> <td>- 5,500백만원</td> <td>- 7,500백만원</td> </tr> <tr> <td>목표</td> <td>- 500명(100개 단체)</td> <td>- 1,050명</td> </tr> <tr> <td>대상</td> <td>- 연령 : 20~35세 이하 - 유형 : 예술단체 지원</td> <td>- 연령 : 20~39세 이하 또는 - 경력 : 데뷔(설립)10년 이하 - 유형 : 예술가 및 단체, 예술공간 지원</td> </tr> <tr> <td>특징</td> <td>- 10개월간 80회 이상 작품 발표활동을 위한 예술활동 일자리 창출 개념의 고정적 지원</td> <td>- 창작 준비 과정(연구, 실험, 워크숍 등)부터 작품 발표(공연/전시)까지 예술창작 과정지원</td> </tr> <tr> <td>내용</td> <td>- 활동비 : 최대 3,500만원 ↳ 월 70만원/인 x 활동개월 x 3인(이상) - 사업비 : 최대 1,500만원 - 멘토링 지원</td> <td>- 사업비 : 200~3,500만원 - 간접지원 : 발표공간, 교류·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td> </tr> <tr> <td>주관</td> <td>- 서울시</td> <td>- 서울문화재단</td> </tr> </tbody> </table>	구분	2017 서울청년예술단	2017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목적	- 단기 예술경력으로 인해 공공 지원에서 소외되고 예술계에 안착하지 못한 청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예술창작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기존 예술지원제도의 시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인 대상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 활동 기반 조성	규모	- 5,500백만원	- 7,500백만원	목표	- 500명(100개 단체)	- 1,050명	대상	- 연령 : 20~35세 이하 - 유형 : 예술단체 지원	- 연령 : 20~39세 이하 또는 - 경력 : 데뷔(설립)10년 이하 - 유형 : 예술가 및 단체, 예술공간 지원	특징	- 10개월간 80회 이상 작품 발표활동을 위한 예술활동 일자리 창출 개념의 고정적 지원	- 창작 준비 과정(연구, 실험, 워크숍 등)부터 작품 발표(공연/전시)까지 예술창작 과정지원	내용	- 활동비 : 최대 3,500만원 ↳ 월 70만원/인 x 활동개월 x 3인(이상) - 사업비 : 최대 1,500만원 - 멘토링 지원	- 사업비 : 200~3,500만원 - 간접지원 : 발표공간, 교류·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주관	- 서울시	- 서울문화재단
구분	2017 서울청년예술단	2017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목적	- 단기 예술경력으로 인해 공공 지원에서 소외되고 예술계에 안착하지 못한 청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예술창작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기존 예술지원제도의 시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인 대상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 활동 기반 조성																							
규모	- 5,500백만원	- 7,500백만원																							
목표	- 500명(100개 단체)	- 1,050명																							
대상	- 연령 : 20~35세 이하 - 유형 : 예술단체 지원	- 연령 : 20~39세 이하 또는 - 경력 : 데뷔(설립)10년 이하 - 유형 : 예술가 및 단체, 예술공간 지원																							
특징	- 10개월간 80회 이상 작품 발표활동을 위한 예술활동 일자리 창출 개념의 고정적 지원	- 창작 준비 과정(연구, 실험, 워크숍 등)부터 작품 발표(공연/전시)까지 예술창작 과정지원																							
내용	- 활동비 : 최대 3,500만원 ↳ 월 70만원/인 x 활동개월 x 3인(이상) - 사업비 : 최대 1,500만원 - 멘토링 지원	- 사업비 : 200~3,500만원 - 간접지원 : 발표공간, 교류·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주관	- 서울시	- 서울문화재단																							

건의사항	조치결과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지원(최초예술지원+서울청년예술단+청년예술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70억원('17년 75억원 대비 7% 감액) ○ 유망예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5억원('17년 대비 625백만원 대비 20% 감액) ○ 예술의 사회적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5억원('17년 대비 11억5천만원 대비 57% 감액) 												
<p>6. 매개자 사업은 필요하지만 서울시 혁신공동체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니 검토바람 (생활문화사업팀)</p>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혁신기획관 중복 사업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혁신기획관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해결하면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임 - 세부 추진내용 비교 및 검토 결과, 생활예술매개자(FA) 양성 사업은 서울시 전역의 시민 문화예술 활동과 자원 활동을 발굴·지원하는 매개활동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중복성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매개자 공모 계획 수립 시 활동 내용 검토 및 내부 심사를 거쳐 중복 활동 지원자는 제외하고자 함 												
<p>7.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 계획 관련, 사업 및 예산내용이 실행단계까지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 바람 (창작지원팀)</p>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사업설명(공고일 2월28일) 당시와 동일한 세부사업과 예산배분으로 추진되고 있음 <table border="1" data-bbox="544 1624 1422 2049"> <thead> <tr> <th>세부사업</th> <th>대상</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최초예술지원</td> <td>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39세 이하 예술인 또는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인</td> <td>- 작품 구상을 위한 자료조사, 워크숍 등 발표 전 단계 사전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창작준비 지원 -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발표를 지원하는 작품 발표 지원</td> </tr> <tr> <td>서울청년예술단</td> <td>35세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td> <td>-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창작활동비 및 사업비 지원</td> </tr> <tr> <td>청년예술공간지원</td> <td>청년예술인(단체) 창작 발표 및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td> <td>- 청년예술인(단체)의 안정적 창작기반과 상호 협력 플랫폼 조성을 위해 민간에서 운영 중인 공연·전시장, 복합문화공간 대상 공간운영비(임차료, 운영자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지원</td> </tr> </tbody> </table>	세부사업	대상	내용	최초예술지원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39세 이하 예술인 또는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인	- 작품 구상을 위한 자료조사, 워크숍 등 발표 전 단계 사전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창작준비 지원 -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발표를 지원하는 작품 발표 지원	서울청년예술단	35세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창작활동비 및 사업비 지원	청년예술공간지원	청년예술인(단체) 창작 발표 및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예술인(단체)의 안정적 창작기반과 상호 협력 플랫폼 조성을 위해 민간에서 운영 중인 공연·전시장, 복합문화공간 대상 공간운영비(임차료, 운영자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지원
세부사업	대상	내용											
최초예술지원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39세 이하 예술인 또는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인	- 작품 구상을 위한 자료조사, 워크숍 등 발표 전 단계 사전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창작준비 지원 -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발표를 지원하는 작품 발표 지원											
서울청년예술단	35세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창작활동비 및 사업비 지원											
청년예술공간지원	청년예술인(단체) 창작 발표 및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예술인(단체)의 안정적 창작기반과 상호 협력 플랫폼 조성을 위해 민간에서 운영 중인 공연·전시장, 복합문화공간 대상 공간운영비(임차료, 운영자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지원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선정결과</p> <table border="1" data-bbox="544 282 1445 645"> <thead> <tr> <th>세부사업</th> <th>접수</th> <th>선정</th> <th>선정률</th> <th>예산(백만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2,188건</td> <td>359</td> <td>16%</td> <td>4,782,800천원</td> <td></td> </tr> <tr> <td>최초예술지원</td> <td>1,518명</td> <td>266명</td> <td>18%</td> <td>1,519,200천원</td> <td>하반기 2차공모 예정</td> </tr> <tr> <td>서울청년예술단</td> <td>574단체 (2,793명)</td> <td>58개단체 (281명)</td> <td>10% (단체기준)</td> <td>2,400,600천원</td> <td></td> </tr> <tr> <td>청년예술공간지원</td> <td>96건</td> <td>35건</td> <td>37%</td> <td>863,000천원</td> <td></td> </tr> </tbody> </table> <p>□ 향후계획</p> <p>○ '17~'18년 운영결과를 토대로 '19년 사업계획 수립에도 정확도를 높여 계획→실행단계를 일치시키도록 함</p>	세부사업	접수	선정	선정률	예산(백만원)	비고	합계	2,188건	359	16%	4,782,800천원		최초예술지원	1,518명	266명	18%	1,519,200천원	하반기 2차공모 예정	서울청년예술단	574단체 (2,793명)	58개단체 (281명)	10% (단체기준)	2,400,600천원		청년예술공간지원	96건	35건	37%	863,000천원	
세부사업	접수	선정	선정률	예산(백만원)	비고																										
합계	2,188건	359	16%	4,782,800천원																											
최초예술지원	1,518명	266명	18%	1,519,200천원	하반기 2차공모 예정																										
서울청년예술단	574단체 (2,793명)	58개단체 (281명)	10% (단체기준)	2,400,600천원																											
청년예술공간지원	96건	35건	37%	863,000천원																											
<p>8. 생활예술매개자 전문매개자, 시민매개자 구분되었는데, 매개자 활동 시 어려움이 예상됨. 내년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장기사업이 되도록 노력바람 (생활문화사업팀)</p>	<p>□ 추진상황 : 완료</p> <p>□ 추진내용</p> <p>○ 생활예술매개자(FA) 전문매개자, 시민매개자 선발 및 활동지원 - 전문매개자, 시민매개자 인력 양성 및 운영의 경우, 현장의 연계성 등을 검토해 연차별 추진 계획 수립</p> <p>□ 향후계획</p> <p>○ 2017년도 매개자 사업의 원년으로 동아리 발굴사업에 집중</p> <p>○ 2018년도 소네트워크 발굴 등을 통한 생활예술 매개자 양성 단계별 시스템 구축</p> <p>○ 2019년도 기 발굴한 소네트워크의 대표자 성격인 시민 매개자 선발 운영 확대 및 전문 매개자 지속 운영</p>																														
<p>9. 장노년층의 경우 “거버넌스 25”, “아티팻” 같은 용어 알 수가 없으니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바라며, 공정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생활문화사업팀)</p>	<p>□ 추진상황 : 완료</p> <p>□ 추진내용</p> <p>○ ‘거버넌스25’ 사업명을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으로 변경</p> <p>○ ‘아티팻’ 사업 폐지</p> <p>○ 공정한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철저한 2018 운영계획 수립</p> <p>□ 향후계획</p> <p>○ 2018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사업 관리 : '18. 11~12.</p>																														

건의사항	조치결과
<p>10. 자치구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자치구 문화재단과 자치구 문화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분할 것. (지역문화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문화재단은 자치구 대상으로 사업을 위탁하지 않음 ○ 일부 공모 지원사업의 경우 자치구문화재단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배분 방향이 아닌 경쟁 공모를 통해 지원하며 자치구 문화원 또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 공모지원사업은 자치구문화재단 또한 타단체와 공정한 경쟁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배분의 대상이 아님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 1개 사업의 경우 자치구문화재단이 설립된 자치구에는 문화재단에 우선 신청권한이 있으나, 해당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취지에 따라 문화재단의 지역 역량 강화라는 취지 또한 추구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이 미설립 되었거나, 문화재단의 추진 의사가 없는 자치구의 경우 문화원에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 또한 지역 문화 기관으로 적극적인 파트너십 대상이며, 사안에 따라 보다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단, 별도로 문화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위탁하거나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지원사업 취지에 적합한 계획에 대해 경쟁 공모를 거치는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함
<p>11. 거버넌스 관련 자문회의 횟수가 너무 많음. 효율성에 의문이 가니 검토바람. (생활문화사업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자문단 운영 계획 및 운영 내역검토 완료하여 2018년도 사업시 개선사항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진행상황에 따른 탄력적 자문회의 운영으로 횟수 축소 (2017년도 대비 운영 횟수 50% 수준) ○ 자문회의 운영 횟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진행상황에 따른 탄력적 자문회의 운영으로 횟수 축소 (2017년도 대비 운영 횟수 약 50% 수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선정 25개 자치구 사업 관리 : '18. 11.~12.
<p>12. 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는 세종에서 3년간 운영 하던 사업을 이어, 2억 가량이던 예산의 4배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산 : 2017년 7.2억 → 2018년 4.5억 (국내+해외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대비 37.5% 예산절감 ○ 17/18년 주요 사업성과 현황

건의사항	조치결과															
<p>편성했다. 8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국제행사로 진행하였는데 효과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생활문화사업팀)</p>	<table border="1" data-bbox="608 228 1402 400"> <thead> <tr> <th>구분</th> <th>17년도</th> <th>18년도</th> </tr> </thead> <tbody> <tr> <td>공연횟수</td> <td>20회</td> <td>25회</td> </tr> <tr> <td>협력기관</td> <td>7개</td> <td>8개</td> </tr> <tr> <td>국내경선지원</td> <td>53팀</td> <td>61팀</td> </tr> <tr> <td>축제추진위원회 개최</td> <td>3회</td> <td>7회</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국제사업 부문 재단 내부의 통합운영 추진을 통해 사업전반의 업무효율성 증가 ○ 축제기간 경선이 아닌, 공연형태의 시민참여 ‘축제’ 진행 → 〈서촌마을오케스트라〉 신규 기획공연 운영을 통한 참여도 확대 ○ 17년 대비 해외초청 단체 규모 축소로 국내부문 사업 발전계기 마련 ○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및 운영기구 ‘축제추진위원회’ 활성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생활예술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추진을 통한 국내생활 예술오케스트라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교류기반 확대 ○ 국내·국제 사업의 지속적인 통합운영계획 추진으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구분	17년도	18년도	공연횟수	20회	25회	협력기관	7개	8개	국내경선지원	53팀	61팀	축제추진위원회 개최	3회	7회
구분	17년도	18년도														
공연횟수	20회	25회														
협력기관	7개	8개														
국내경선지원	53팀	61팀														
축제추진위원회 개최	3회	7회														
<p>13. 청년예술지원 관련 예산 집행 적절성이 우려되니 검토바람 (서울을 바꾸는 예술 중 명상 앱 개발 및 미세먼지 제거 프로젝트 등) (지역문화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업무)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2919(2016.10.19,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 310호) 「서울 예술인 플랜(안)」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창작안전망을 구축하여 창작활성화 및 공정한 예술 활동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의 「서울 예술인 플랜」을 근거로 청년예술인 종합 지원 사업 추진 중 - 2017년 청년예술인 종합지원 사업의 세부 분야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Y)〉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사업 내 ‘사회문제에 대한 메이커적(예술+기술) 해결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음 - 기존의 예술창작지원 제도와는 차별화되는 기획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예술 활동과 기술 기반의 문화예술 분야의 메이커 활동을 지원 하여, 예술의 가치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예술생태계의 자생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총 17건, 210,000천원 지원) ○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청년예술인 선정</u> : 심사지표(사업 구성, 실행/예산 적절성, 성과 등)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5인의 공정한 서류·인터뷰 															

건의사항	조치결과						
	<p>심사를 거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관리 : 지원금 별도 계좌를 개설해 교부,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 상시 관리 - 평가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위해 외부평가 위원 2인의 현장평가 실시 완료, 사업종료 후 집행요령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의 행정평가 진행 중(2018. 1. 9. 현재) <p>▶ 해당 지원 건의 경우 새로운 예술적인 메이커의 발굴·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선정된 것으로, 충실히 사업 수행 중인 것으로 검토함</p> <table border="1" data-bbox="544 674 1414 969"> <thead> <tr> <th>지원 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명상앱 개발 (12,000천원)</td> <td>- 목적: 청년세대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명상'을 통해 해소 - 방법: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된 명상키트를 제작 및 시민참여 워크숍 진행, 명상 앱 개발 등</td> </tr> <tr> <td>미세먼지 관련 (10,000천원)</td> <td>- 목적: 사회 의제(대기오염 등)에 대해 예술과 기술 기반의 메이커적 해결방법을 구상하고, 이를 시민 참여 생활문화활동으로 확장 - 방법: 시민참여형 DIY 미세먼지 측정기 만들기 워크숍, 조선백자를 모티브로 한 미세먼지 측정기 개발 등</td> </tr> </tbody> </table>	지원 구분	내용	명상앱 개발 (12,000천원)	- 목적: 청년세대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명상'을 통해 해소 - 방법: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된 명상키트를 제작 및 시민참여 워크숍 진행, 명상 앱 개발 등	미세먼지 관련 (10,000천원)	- 목적: 사회 의제(대기오염 등)에 대해 예술과 기술 기반의 메이커적 해결방법을 구상하고, 이를 시민 참여 생활문화활동으로 확장 - 방법: 시민참여형 DIY 미세먼지 측정기 만들기 워크숍, 조선백자를 모티브로 한 미세먼지 측정기 개발 등
지원 구분	내용						
명상앱 개발 (12,000천원)	- 목적: 청년세대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명상'을 통해 해소 - 방법: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된 명상키트를 제작 및 시민참여 워크숍 진행, 명상 앱 개발 등						
미세먼지 관련 (10,000천원)	- 목적: 사회 의제(대기오염 등)에 대해 예술과 기술 기반의 메이커적 해결방법을 구상하고, 이를 시민 참여 생활문화활동으로 확장 - 방법: 시민참여형 DIY 미세먼지 측정기 만들기 워크숍, 조선백자를 모티브로 한 미세먼지 측정기 개발 등						
<p>1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청소년사업을 확대해 주기 바람(2015년 23건, 2016년 19건, 2017년 17건) (기획조정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자료 63번 <2015~2017년 청소년 대상 사업 현황 및 실적>을 근거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2016년 창작공간이 예술창작 지원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창작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 사업의 가짓수가 줄어든 결과임 ○ 오히려 교육사업이 예술교육본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서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 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사업 등 실제 실행 횟수 및 수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교육본부 및 청소년사업 운영 창작공간과 검토의견 공유하여 교육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확대 방안 우선 고려하도록 공지 및 관리 						
<p>15. 시민만족도가 높지만 사후 관리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기바람 (기획조정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피드백 워크숍 진행('17. 8.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공유 및 개선과제 도출을 통한 개선계획 구체화 ○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성과 격려('17년 12월 말 시행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업 담당자 및 우수부서 시상을 통한 성과 격려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CS역량 강화를 통한 개선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점점 직원, 신규직원 대상 CS 교육 시행 						

건의사항	조치결과
<p>16. 거버넌스25 사업공모 탈락 자치구(강서, 광진, 동대문)에서 생활예술축제 사업 등 잘 진행되는데 매뉴얼도 없고 실행계획도 없이 탈락시킨 거문제가 있으니 검토하여 주기 바람 (생활문화사업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자치구 공모 심사 내용 면밀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서, 광진, 동대문구는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환경조성 미흡으로 1·2차 심사, 컨설팅 과정을 거쳐 미선정 ○ 2018년 거버넌스 사업 공모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선정 완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선정 25개 자치구 사업 관리 : '18. 7~12.
<p>17. 예술축제지원사업의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해당축제 단체에만 개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개선하여 주기바람 (축제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선정단체 설명회 및 평가좌담회 등을 통한 예술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진행 ⇒ 평가결과 공개방식 현행 유지 - 선정 예술축제의 평가결과는 예술성과 지원금집행기준 및 행정절차 준수 여부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평가결과는 공개는 해당 예술가(단체)의 사업정보나 경영 및 전략 등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의 노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해당 사업은 일반적인 행사성 축제가 아닌 순수예술분야의 전문예술축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공개된 평가결과 점수가 지원작품(축제)의 예술성에 대한 등급이라는 오해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음. 이에 여타 예술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평가결과를 전체공개하지 않고 해당 단체에 개별 통보하는 것으로 진행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평가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 진행
<p>18. 청년사업 대상자의 나이 책정기준을 데뷔(경력)10년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창작지원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은 청년예술인의 기준을 '연령' 또는 '경력'으로 구분하고 있음 - 연령 기준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청년관련 주요 정책에서 정하는 연령 기준 중 가장 높은 연령을 채택하여 39세(이하)로 설정하였음 - 또한 청년을 생물학적 나이로만 제한하지 않고, 예술활동 경력 면에서도 지원 기회가 적었던 데뷔 10년 이하의 단기 경력 보유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건의사항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단은 타 기관 청년대상 사업 대비 ‘연령’과 ‘경력’면에서 폭넓은 기준으로 청년예술인을 정의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당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계획임